

	<b>방사선안전관리규정</b>	규정번호	3-1-11
		제정일자	2019.03.01.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에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엑스선, 감마선, 알파선 등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관계기관에서 정하는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 방사선의 방사선량,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 오염도가 관계기관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5.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폐기·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시출입자”라 함은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

##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조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둔다.

제5조(직무) ① 총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 방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소지한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 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2. 방사선장해 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 및 각종 기록의 비치 등 방사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기타 원자력안전법 관련 기술 기준 준수 및 행정적인 조치사항 등을 수행한다.

③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통제 하에 해당 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방사선관리구역 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가능한 피폭방사선량을 적게 받도록 노력한다.

### 제3장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방사선안전관리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안전관리 관계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한다.

### 제4장 방사성동위원소 취급기준 등

제11조(방사성동위원소 취급기준 준수)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 사용, 저장 및 폐기할 때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한다.

제12조(방사선발생장치 취급기준 준수)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은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한다.

제13조(방사선관리구역) 방사선관리구역을 정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제한하며 주기적으로 방사선량을 및 표면오염도를 측정 관리한다.

제14조(종사자 관리) 방사선작업으로 인한 종사자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과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교육훈련 및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제15조(장비의 보정 등)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정하되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등을 측정할 때의 오차를 방지한다.

제16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작업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장해가 우려되

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방사선관리구역 내 시간의 단축, 작업 전환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한다.

제17조(위험시의 조치) 방사선 관련 사고로 인한 위험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제18조(보고 등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관련 기관에 보고를 하며, 방사선 안전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법 및 동 시행령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기준과 동 시행규칙에 의해 작성된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